
Ⅲ.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세제

1. 현황

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¹⁹⁾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로는 고객과 금융기관의 계약형태에 따라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신탁형은 고객과 금융회사가 신탁(Trust)계약을 맺는 형태이고, 조합형은 고객이 금융회사가 설립한 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투자 과실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회사형은 고객이 금융회사가 설립한 투자회사의 주주가 되어 투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형태이다.

집합투자기구가 되기 위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세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정의하고 있는 투자기구이어야 하고, 둘째,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하며, 셋째, 실물이 아닌 금전에 의한 위탁과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⁰⁾ 집합투자기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회사형은 배당으로 조합형은 소득유형별로 과세한다.

19)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및 제8항.

참고 2 배당 그리고 분배

- 배당은 소득세법상 국내·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로부터 수령한 이익이나 잉여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함.²¹⁾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배당은 법인으로부터 주주 등의 관계로 인해 법인 혹은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의 이익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것을 배당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세제상의 특징은 배당의 정의에 따른 배당 소득은 배당소득세(세율 14%) 과세대상이 됨.

- 분배(distribution)란 재화 혹은 용역의 생산과정에 참여한 개인, 법인 등 구성원이 그 생산된 재화나 용역 또는 이에서 비롯된 소득 등을 사회적 법칙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²²⁾
 - 법률상 분배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민법, 상법 등에서는 단체 등에서 단체 구성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의미로 사용됨.
 - 따라서, 배당은 분배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배당이 아닌 분배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음.

- 집합투자기구를 규정하는 법조문에 배당이 아닌 분배로 표기한 이유는 결산 시 이익을 나누는 행위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회사형인 경우 배당을, 조합형인 경우에는 분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2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22) 장재형(2014).

나.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방법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본적으로 통산하여 결산 분배하는 시점 혹은 환매하는 시점에 과세한다. 단, 주식양도 차익 등 일부손익은 과세제외하고 여타 모든 소득의 손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상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하므로 결산시점에 과세대상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며, 과세기간 중 결산 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산을 환매하는 경우 투자이익을 현실화하는 시점에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이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가 이자배당 및 매매차익 등을 합산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서 손실과 비용을 공제한 후 투자자의 몫이 되는 이익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수수료 및 유지보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한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특징은 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파생상품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주식의 자본이익의 경우 과세제외된다는 점인데, 이는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및 자본시장활성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단, 채권 및 장외 파생상품의 양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환매 혹은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게 되는데, 이때 집합투자증권을 환매 혹은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소득 계산 시 분배·환매 혹은 양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전체 가격에서 과표제외 항목은 제외한 후 과표기준을 결정하며, 각 과세연도별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결산하므로 과세연도 간 손실과 이익은 통산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시점은 투자자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시점(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 혹은 결산일,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일, 재투자 특약으로 인해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시킨 날 등)을 소득시기로 보아 동일한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정한다. 과세의 집행은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리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이때,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데, 이는 완납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해도 종합소득세 선택은 불가능하다. 만약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총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 여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특징과 상품별 과세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는 전반적으로 실체이론을 따르나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관이론에서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집합투자기구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실체 과세이론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도관이론은 투자기구는 투자금이 투자되는 도관(Pipe line)일 뿐이므로 모든 금융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적격투자기구는 해마다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 지는데, 이 역시 실체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펀드에 이익이 지급되는 시점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펀드 자체를 수익주체인 실체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세표준 산정 시 각종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사용된 수수료를 운용수익으로부터 공제하는데, 이 역시 경제적 실체인 투자기구의 비용을 인정하는 실체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 상장주식 거래차익 등 일부 손익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도관이론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납세의무자를 투자자로 한 것은 실체가 있는 개인에게 과세 의무를 지움으로서 징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 매매차익 등 일부손익 과세제외의 경우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특정 이론을 따라 과세방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방식을 만들어 놓고 어느 이론에 따라 구성했는지를 분석하니 실체이론을 따르나 일부 예외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참고 3 실체이론과 도관이론

■ 실체이론(Entity Theory)은 집합투자기구의 사회적,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독립적인 과세상의 실체로 인정하는 이론임.

○ 즉,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이 수탁자인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

– 투자기구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자와는 별개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 단, 이익의 90% 이상을 결산·분배하는 적격투자기구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이 최종적인 귀속자인 투자자에게 귀속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이 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다가 결산시점에 지급되므로 투자자 과세 시 배당이익으로 과세하게 됨.

○ 실체이론은 투자기구의 사회, 경제적 역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지되나, 반면 실질과세원칙을 외면한 채 형식을 좇아 과세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도관이론(Conduit Theory or Aggregate Theory)은 집합투자기구를 독립적인 과세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도관(Conduit)으로 보는 이론임.

○ 즉, 집합투자기구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고 투자펀드가 맡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영 이익 또는 손실을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과세함.

○ 도관이론에 근거하여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됨.

참고 3의 계속

○ 도관이론은 수익의 흐름이 궁극적으로 귀착되는 자를 관찰하여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이 투자기구에 머물렀다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됨에 따른 과세상의 시차를 설명할 수 없고, 투자기구에 소득이 유입되는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자료: 김용민(2010), 「집합투자기구 세제에 관한 연구」 내용을 재정리.

2. 이슈 및 주요쟁점

집합투자기구(펀드) 과세의 주요 쟁점은 일부손익 과세와 손익통산 불가 등으로 인해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 투자형태 혹은 투자 지역 그리고 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이슈 및 쟁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손실 시 과세의 문제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투자액의 일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손익 항목의 통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매매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이자·배당 등에서 수익이 발생했으나 투자기구(펀드)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유가증권의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이를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해 설명하면,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여 주식 투자분에서는 100만 원의 매매손실(자본손실)이 발생하고, 채권투자분에서는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주식

투자분 매매손실의 경우 과세제외되거나 채권투자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져 투자자 입장에서는 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해 투자된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손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표 Ⅲ-1〉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 상장주식 과세제외의 예

구분	주식투자손익	이자·배당	통산손익	과세여부
펀드 A	-100	+50	-50	이자배당(50)에 대해 과세
펀드 B	+100	+50	+150	이자배당(50)에 대해 과세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시 과세가 되는 또 다른 경우로 두 개의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한 경우 두 펀드를 통산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 A의 과세대상 소득이 10만 원이고 역외펀드 B에서 3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A와 B의 손익을 통산할 경우 2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나 과세 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펀드 A에 대해 과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순이익에 과세하고, 동일한 규모의 소득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기 위해 여러 수익과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재 과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물론 일정규모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일반적인 원칙을 금융소득과세에 비추어 볼 때 펀드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체계와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 펀드 간 손익통산의 문제

구분	역외주식투자	이자·배당	통산손익	과세여부
펀드 A	0	+10	+10	이자배당(10)에 대해 과세
펀드 B	-50	+20	-30	비과세
개인합	-50	+30	-20	이자배당(10)에 대해 과세

투자기간을 고려한 손실의 통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집합투자기구는 1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해당 과세대상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²⁴⁾ 장기투자 시 과세기간 간 통산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손실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다년간의 투자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투자 마지막 해에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수익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의 통산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투자 첫해에 과세대상 소득에서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둘째 해에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다음 셋째 해에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연 1회 결산·분배 시 첫째 해에는 50만 원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나 둘째 해의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대상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며, 마지막 해에는 다시 50만 원에 대해 과세하여, 투자기간 전체로 보았을 때는 투자이익이 없으나, 100만 원의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²⁵⁾

〈표 Ⅲ-3〉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연도별 손익통산의 문제

구분	2013	2014	2015	통산손익
펀드손익	+50	-100	+50	0
과세여부	50에 대해 과세	비과세	50에 대해 과세	통산소득은 0이나 과세

정부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 과세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6년 4월 결산 분부터는 이자·배당 등 소득은 매년 결산·분배하여 과세하되,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 시 일괄과세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4) 집합투자기구를 연 1회 결산·분배는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실제로 보아 과세한다는 의미와 함께 장기투자로 인해 수익이 누적될 경우 수익을 현실화하는 시점에 누진세 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음.

25)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모두 합쳐 환매 시 일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단, 이자·배당 등 확정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매해 결산·분배하여 과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차익 손실 시 이자·배당 소득과 통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과세대상의 예외 존재, 집합투자기구 간 통산 불가 등 투자손실 발생 시에도 투자자에게 과세가 되는 불합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손실 발생 시 과세가 될 수 있는 현재 과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나. 투자 형태에 따른 과세형평문제

개인투자자의 경우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 시 과세 방식의 차별이 존재하는데, 이를 투자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개인이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을 수령한 경우에만 이자·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며,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반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연 1회 결산을 통해 투자자가 이익을 실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상장주식투자로 인한 자본손익을 제외한 과세대상 평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실체과세 이론을 따르는 과세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할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혹은 평가차익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²⁶⁾ 따라서,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 혹은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 신탁 혹은 일임형 랩(Wrap) 등을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투자금의 미실현 이익 및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배당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 국내외 구분에 따른 과세형평성

국내 주식형펀드의 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나 해외주식형 펀드의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된다. 앞서 기술한대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제도는

26) 개인의 경우 역시 채권투자를 통해 자본이득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함. 따라서, 펀드의 채권투자 자본이익의 경우 과세 당국에서 해당 거래가 사업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외 조항이며, 펀드 투자 시 국내 상장주식 비과세 적용은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상장주식으로 부터의 자본이득에서도 투자자산이 국내 혹은 국외 펀드 여부에 따라 투자자의 세 부담 및 세후수익률이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에 투자하였음에도 투자지역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나뉘게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해외펀드투자에 대한 비과세가 특례형태로 도입된 적이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인당 3,000만 원까지 해외투자에 펀드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펀드 비과세특례’ 규정에 기반을 두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소득세법의 ‘일부손익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였다. 과거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원화가 강세인 시기에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의 특이 사항으로는 과거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제도는 현지통화 표시 시세차익으로 한정되어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였으나,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해외투자 비과세 펀드의 경우 환차익 역시 비과세되도록 정비되었다.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시에도 역외펀드 및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할 경우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반면, 역외 및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분류가 직관적이지만 펀드의 경우 펀드자체를 실체로 보는 관점을 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 주식의 손익 통산이 가능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 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 규모가 크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반면, 펀드로 부터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을 적용받을 경우 직접투자 및 여타 펀드와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

자·배당 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대되는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역외펀드 혹은 해외펀드보다 직접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내 주식직접투자와 펀드투자 간에 고려된 형평성이 해외 주식투자 시에는 유지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제적 실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상이한 경우 금융투자로부터 효용 및 수익률보다 세제로 인해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산 배분의 왜곡을 발생시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라. 투자기구 형태에 따른 과세 상이점

실질이 동일함에도 과세가 다른 경우는 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른 과세 방식의 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회사형과 신탁형의 이익 실현을 위한 분배 혹은 환매 시 모두 배당소득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사형은 투자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되파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고, 신탁형의 경우 채권(수익증권)을 시장에 되파는 것과 같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기구의 주식 혹은 수익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양도) 시 주식형 혹은 신탁형 종류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만약, 제3의 투자회사에 수익증권 혹은 집합투자회사 지분증권을 매도할 경우 그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일반인에게 매도할 경우 과세표준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²⁷⁾ 반면, 신탁형의 경우 주식형과 신탁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배당으로 과세한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소득과세의 경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존재하며 분류과세로 인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20%의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시 14%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으나 소득금액이 여타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과세의 적용

27)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종과세 방지규정에 따른.

여부는 투자자 상황에 따라 세후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앞서 소개한 해외 투자에 대한 역내/역외 ETF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역내 ETF는 주로 신탁형인데 반해 역외 ETF는 주로 회사형으로 구분되므로 역내 ETF는 배당소득세로 역외 ETF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고액투자자들은 역외 ETF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그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로 연결된다.

3. 해외의 집합투자기구 세제

가. 영국

1) 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기구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산을 보유, 운용하고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기구로 크게 승인형과 비승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투자신탁은 투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간접투자기구로서 투자회사의 성격과 간접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투자신탁의 종류로는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법(Finance Service and Markets Act) 제243조에서 승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형 투자신탁²⁸⁾과 비승인형 투자신탁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승인형 투자신탁은 개방형 투자신탁²⁹⁾과 폐쇄형 투자신탁³⁰⁾으로 구분된다. 개방형 투자신탁에는 승인단위신탁(Authorized Unit Trust)과 개방형 투자회사(Open-Ended Investment

28) 승인형 투자신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영국 내에 있고 주요한 사무를 영국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해외투자펀드가 설립되어도 영국 내에서 투자자문과 관리업무가 수행되어야 함.

29)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낸 자본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 신탁.

30) 자본금의 증감이 증가·감자로 이루어지는 투자 신탁으로 투자자가 신탁 회사에 대하여 매입 청구, 해약, 신탁 재산의 감축을 요청할 수 없음.

Companies) 등이 있으며, 폐쇄형 투자신탁에는 승인투자신탁회사(ITC: Approved Investment Trust Company)와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 Venture Capital Trusts) 등이 있다. 비승인형 투자신탁은 신탁, 파트너십, 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비승인 단위신탁(Unauthorized Unit Trust)과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표 Ⅲ-4〉 영국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구분	형태	투자형태
승인형	개방형	승인단위신탁
		개방형투자회사
	폐쇄형	승인투자신탁회사
		벤처캐피탈 투자신탁
비승인형	-	비승인 단위신탁
		비승인 투자회사
		조합(파트너십)

영국은 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투자사업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소득에 대해 구분하여 과세한다. 투자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크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투자자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소득을 투자회사에게 배당(국내원천 배당소득)하기 때문에 투자회사에게 또 다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법인으로부터 배당(국외원천 배당소득, FID: Foreign Income Dividend)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배당받기 때문에 투자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 투자자산 운용결과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2) 승인형 투자신탁의 과세제도

가) 승인형 투자신탁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데 사용되는 도관으로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나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법 제24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체가 인정되어 법인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승인단위신탁(AUT)과 승인투자신탁회사(ITC)는 영국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투자신탁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으며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투자신탁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국내원천배당소득의 경우 이미 내국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 분배되었기 때문에 투자신탁에게 이중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투자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이를 배분받은 투자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국외원천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투자신탁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를 투자자에게 분배할 경우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투자자산의 운용결과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요건이 충족된 투자신탁의 경우 승인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없다. 그리고 승인단위신탁(AUT)과 개방형 투자회사(OEIC)의 경우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반드시 결산하여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만큼 배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외에도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은 벤처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벤처캐피탈 투자신탁은 영국세법상 투자회사로 분류된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허용한도 이내로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분배한 배당소득 또한 과세하지 않는다.

나) 투자자

투자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투자한 자산의 운용성과를 배분받은 경우 소득에 대한 과세의무를 부담한다. 투자신탁으로부터 수취한 분배금은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자본이득세로 구분된다.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투자자(개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배분받은 금액에 1/9를 Gross-up 하여 배당소득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1/9 Gross-up 비율에 의한 임퓨테이션 방식³¹⁾에 의해 배당세액을 공제한다. 배당소득세율은 투자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율과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10%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고율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32.5%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투자자에게 국외원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분배한 경우 투자신탁은 세율 20%로 원천징수된다. 투자자는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손실)을 분배받을 수 없는데 따라서 자본이득(손실)은 수익증권에 포함되어 평가하며 투자자가 이를 환매·처분할 경우 발생한 순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은 투자자는 배당소득세 뿐만 아니라 수익증권의 환매·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세도 과세부담하지 않는다.

3) 비승인형 투자신탁의 과세제도

가) 비승인형 투자신탁

비승인형 투자신탁의 대표적인 단위신탁(UT)은 엄격한 신탁계약으로 도관성이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투자자산 운용결과

31) 임퓨테이션 방식은 출자자가 수령한 배당과 그 배당에 대한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액을 개인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한 후 산출세액으로부터 법인단계에서 그 배당분에 대해 지불한 귀속세액(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임. 이는 법인 원천소득 중에서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임. 투자자의 개인소득세액 산정식=(배당금+귀속법인세액+다른 종합소득)×개인소득세율-귀속법인세액×귀속법인세액=배당금(원천징수된 세액 포함)×(법인세율/(1-법인세율))

발생한 자본이득은 수탁자의 소득으로 본다. 수탁자는 별도의 개인으로 간주되어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과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위탁자를 위하여 소득세를 대납한다. 이때, 수탁자는 필요경비 등이 공제된 세후 소득을 위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나. 미국

미국의 간접투자기구는 설립형태에 따라 법인형, 조합형(Partnership), 신탁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법상 법인으로 분류된 간접투자기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조합형 간접투자기구나 신탁형 간접투자기구는 각자의 과세제도에 따라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차적으로 투자대상 회사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차적으로 투자회사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소득으로 과세되어 이중과세(삼중과세)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조정해주는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간접투자기구는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적격투자회사(RIC: 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³²⁾로 분류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세무상 특칙 Subchapter M³³⁾을 적용하

32) 미국 연방세법상 적격투자회사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 ① 당해 과세연도 전체에 걸쳐 간접투자기구는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상 운용투자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 간접투자기구가 미국 연방세법상 적격투자기구나 취급되도록 신고하여야 함.
- ③ 과세연도 동안에 간접투자기구의 총소득 중 최소 90% 이상이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증권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이익, 외화거래차익, 증권 또는 외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투자소득에서 발생해야 함. 이때 총소득을 구성함에 있어서 면세이자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나, 증권의 양도손실은 제외함.
- ④ 과세연도 각 분기 말에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한 간접투자기구의 자산 중 50% 이상이 반드시 현금성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함.
- ⑤ 간접투자기구는 어느 한 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특수관계자이면서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영위하는 2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간접투자기구 전체 자산의 2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⑥ 상기 요건들을 만족하는 간접투자기구는 Subchapter M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익의 잉여금을 유보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자본이득을 제외한 일반소득과 면세이자소득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함.

33) Subchapter M은 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세부

고 있다. 반면, 적격투자회사로 분류되지 않은 조합형 간접투자기구인 경우 일반 조합형 과세제도에 따라 과세된다.

1) 적격투자기구의 과세제도

적격투자기구는 법률상 실체가 인정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도관성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는 경감된다. 적격투자기구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순자본이득과 순영업손실을 포함한 후 지급배당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당해 연도 일반소득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이를 지급배당 공제제도로라 한다.

자본이득은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며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때, 자본이득을 제외한 일반소득과 면제이자소득은 90% 이상이 배당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나 자본이득은 반드시 배분될 필요가 없고, 자본이득이 유보되는 경우, 자본이득소득은 적격투자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며 이러한 경우 최고세율 34%를 한도로 두고 있다. 그리고 자본이득을 배분한 경우, 적격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그들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 자본이득금액과 납부세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본인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적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투자자에게 배분된 소득은 크게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통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은 소득원천에 따라 일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면세이자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일반배당소득은 적격투자회사의 총소득 중 분리과세 배당소득, 면세이자 배당소득, 자본이득 소득을 제외한 후 투자자에게 분배된 소득을 의미한다.

정의, 운용 및 세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령임. 세부 내용은 미국 Government Publishing Office의 <http://www.gpo.gov/fdsys/pkg/USCODE-2010-title26/pdf/USCODE-2010-title26-subtitleA-chap1-subchapM.pdf> 참조.

이를 지급받은 투자자(개인)는 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한 적격투자회사는 지급배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정책적 목적상 특정기업에 투자할 경우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시 일반배당소득과 구분하여 신고하며, 적격투자회사가 분배한 금액의 원천이 비과세지방정부채, 비과세연방정부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일 경우 면세이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비과세한다.

자본이득은 적격투자회사가 과세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투자자(개인)에게 서면 통지에 의해 지정하여 배당한다. 자본이득을 분배받은 투자자는 적격투자회사 지분을 소유한 기간에 상관없이 장기자본이득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장기자본이득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적격투자회사가 자본이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적격투자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지불하였어도 투자자는 자본이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적격투자회사에서 투자자산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격투자회사의 자본이득에서 자본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자본이득을 초과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격투자회사는 순자본손실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적격투자회사 단계에서 자본이득과 8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적격투자회사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배당락일 현재 실제 배당을 지급받고 배당이 차감된 가격으로 주식이 처분된 경우, 투자자는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처분된 주식에 대해서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인식하는 거래차익은 환매되는 규모에 따라 자본손익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법인의 감자 시와 과세처리가 동일하여 지분비율을 균등하게 감자하면 유보금 범위 내에서 받은 대가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고, 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금의 회수에 해당하여 자본이득으로 처리한다.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지급되는 때에 배당소득을 과세하며 자본이득은 적격투자회사가 분배하기로 지정한 날짜가 포함된 과세연도에 과세한다.

다만 10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 중 배당을 선언하고 익년 1월에 지급한 경우 배당선언 연도에 배당을 분배한 것으로 의제하며, 적격투자기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매년 말 혹은 분기 말에 결산하여야 하며, 매년 말 적격투자회사 소득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2) 조합형의 과세제도

조합형³⁴⁾으로 설립된 간접투자기구 중 적격투자회사로 분류되지 않은 간접투자구에 대해서는 조합형 과세제도인 Subchapter K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이 중 개방형(Public Traded Partnership) 간접투자구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때, Subchapter K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접투자기구는 Check-The-Box Rule에 따라 법인의 과세방법이나 조합형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형 과세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과세한다.

조합형 과세방법이 적용된 경우, 간접투자기구는 투자회사법(ICA of 1940)상 투자회사로 분류되며 도관성이 인정되어 분배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의무가 없고 조합원이 그 과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과세소득은 조합형 간접투자기구의 소득에 필요경비와 이익 및 손실을 반영한 후 이를 조합원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산출하며, 이를 배분받은 투자자는 배분받은 금액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형 간접투자기구에서는 투자자산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 단계에서 자본손익을 인식한다. 간접투자기구는 실체가 부인되고 조합원이 과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순자본이득과 순자본손실은 조합원에게 분배되며,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먼저 상계되며 자본이득을 초과한 순자본손실은 3,000달러를 한도로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34) UPA §6(1)은 조합형을 “2인 이상의 사람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로서 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것은 여러 명의 파트너들에 의해서 소유된다는 점에서 개인기업과 다르며, 법인격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도관이라는 점에서 법인과도 다름.

다. 일본

일본의 간접투자기구는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형인 투자신탁과 회사형인 투자법인으로 분류한다.³⁵⁾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신탁약관이나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위탁자의 지시 여부에 따라 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과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투자신탁과 공사채투자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투자법인은 자산을 주로 특정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운용회사가 증권투자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한 결과 발생한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기구이다.

1) 투자신탁의 과세제도

투자신탁(특정신탁 제외)은 수정된 도관으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자의 소득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투자신탁수익에 대한 과세의무는 투자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 발생하고 이를 투자자의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세를 결정하게 되어 투자신탁을 수정된 도관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신탁³⁶⁾은 법률상 신탁이지만 세법상 그 실질이 투자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처분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서 배당금을 공제해주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경우 투자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의 소득으로 분류되며 간접투자기구 설립형태에 따라 공모주식투자신탁, 공사

35) 2009년 금융소득 일체화 이후 현재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태를 갖추게 됨.

36)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특정목적신탁과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투자신탁.

채투자신탁으로 구분하여 달리 과세한다. 투자신탁은 분배한 투자신탁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의 과세의무를 세무행정상 편의를 위해 투자자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공모주식투자신탁(상장된 주식투자신탁은 제외)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경우 이는 투자자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투자법인은 20%(2008년 3월 말까지 상장된 증권투자신탁에서 배분한 수익분배금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공사채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경우 이는 투자자의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투자법인은 투자자가 지급받을 시점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일본에서는 일부 비과세제도가 인정되는 대상자의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는데, 비과세제도가 인정되는 대상자³⁷⁾가 주식의 편입비율이 70% 미만으로 투자한 법인의 발행주식(주식투자신탁³⁸⁾의 형태)을 5% 이하로 보유한 경우에 대해 신탁약관에 기재되어있는 투자신탁에서 분배하는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환(해약)으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투자신탁 종류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기준가액과 개별원본³⁹⁾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공모주식투자신탁인 경우, 주식의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며 기준가액과 개별원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을 초과한 경우 상환(해약)금액의 투자금액 초과분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분리과세한다.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에 미달한 경우에는 원본의 처분손실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며 처분손실금액은 간주양도손실로 취급되어 다른 공모주식투자신탁이나 주식 등의 매각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공사채 투자신탁인 경우, 채권의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며 기준가액과 개별원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단,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을 초과한 경우

37) 65세 이상으로 유족·장애인 연금수급자, 모자 가정자 등.

38) 중기 국채펀드, MMF 등(이상 공사채 투자신탁) 및 운용기본방침에 '안정된 수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해 안정 운용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주식투자신탁만 해당됨.

39) 수익자마다의 구입단가를 세법상 원본으로 봄.

상환(해약)금액의 투자금액 초과분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금액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분리과세한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원본금액에 미달한 경우 원본의 처분손실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매입)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종류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기준가액과 개별원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공모주식투자신탁인 경우,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금액의 투자금액 초과분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금액은 20%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분리과세한다. 이때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에 미달한 경우 원본의 양도손실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며, 양도이득은 다른 공모주식투자신탁이나 주식 등의 매각손실(해양손실, 양도손실, 매입손실 포함)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채투자신탁인 경우, 자본이익은 비과세되며 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매입)손실은 양도(매입)이득과 통산되지 않는다. 투자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에 배분받은 금액으로 과세하며, 투자신탁은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하여야 한다.

〈표 Ⅲ-5〉 일본 투자신탁의 과세제도

(단위: %)

구분		이자·배당		자본이득	
		세목	세율	세목	세율
공모주식 투자신탁	상환 시	배당소득세	20	양도소득세	20
	양도 시	배당소득세	20	양도소득세	20
공사채 투자신탁	상환 시	이자소득세	20	이자소득세	20
	양도 시	이자소득세	20	비과세	-

2) 투자법인의 과세제도

투자법인은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체가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도관성이 일부 인정되어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가 경감된다. 일정 요건⁴⁰⁾을 충족하는 투자법인인 경우 도관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배분한 지급배당금

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법인이 지분율 25% 이상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금 전액 익금불산입하며, 투자법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배당금의 50%만 익금불산입한다. 그리고 연결납세 제도가 적용될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한다. 투자법인이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투자자로부터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투자법인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일본에 본점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배당공제를 적용한다.

투자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투자자의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투자법인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분리과세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의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은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주식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과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40) 투자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관련 법에 의한 투자법인으로 관계 기관에 등록되어야 함.
- ② 투자회사의 설립 시점에 발행한 주식은 반드시 상장되어야 하고 공제된 주식가액은 100만 엔 이상이어야 함.
- ③ 투자회사는 자산을 하나 이상의 투자자문회사나 자산보관회사에 의해서 보관되고 운영되어야 함.
- ④ 일본 내에서 우선 주식이 발행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함.
- ⑤ 과세기간 종료시점에 가족회사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됨.
- ⑥ 세무상 처분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참고 4 일본의 금융소득 과세일체화 추진

- 2004년 일본 산업경제성 산하 세제조사회에서 ‘금융소득 과세일체화’에 대한 세제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금융소득과세의 일체화가 추진됨.
 - 금융소득 과세일체화를 통해 금융상품 간 과세중립성 및 과세의 단순화·간소화를 추진하여 투자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꾀함.

- 금융소득 과세일체화는 과세방식의 균등화, 금융소득 간 손익통산범위 확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적용함.
 - 과세방식의 균등화는 이자·배당 및 유가증권 양도 차익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20%로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주식 투자에 대한 손익을 통산하며, 주식과 채권, 주식 양도 손실과 배당, 채권이자 등의 소득을 모두 통산함.
 - 금융소득은 20%의 단일세율로 분리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적용함.

- 일본의 금융소득일체화는 현재 상당부분 진행되어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소득 간 손익통산 역시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 4 의 계속

〈표 Ⅲ-6〉 금융소득 과세일체화(2009년) 이후 과세체계 변화 비교

구분	과세방식		
	과세일체화 반영 전	과세소득일체화 반영 후	
이자소득	일률원천분리과세	일률원천분리과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원천분리과세 '03년 폐지)	상장주식 소액주주 신고분리과세 도입	
주식거래세	존재	폐지	
양도 소득	주식	'53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과세	신고분리과세로 전환('89년)
	채권	공사채, 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이익 종합과세	20%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파생	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 유지	'89년부터 주식과 동일하게 신고분리 소득과세 도입

자료: 금융투자협회(2012. 4), “자본이득과세 해외사례 조사보고” 재구성.

4. 소결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 과세시점,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 비용처리 등 대부분의 기준에서 볼 때 실제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특징 및 항목별로 살펴보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에 대한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수익을 포괄하며, 결산·분배에 따라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며, 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수료 등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며, 집합투자기구로 이익이 편입되는 시점이 과세 시점이 된다는 점 등이다. 일부 자본이득이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점과 최종 납세 주체가 투자자라는 점은 도관이론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타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도관이론적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장주식 등의 자본이득 및 손실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이다.

현재 집합투자기구 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집합투자기구 전체투자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 주식 매매차익(손) 등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과세대상 소득인 이자·배당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투자기구 전체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과세 제도는 실제이론적 과세논리 상으로도, 국민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체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장주식 매매차익(손)을 과세하지 않는 현재의 과세방식은 투자자로 하여금 세금을 내야 하는 배당보다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양도를 선호하게 하는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에 대한 해외사례(영국, 미국, 일본)를 살펴본 결과 금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이들 국가에서 자본이득(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집합투자기구에서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까지 이월공제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국가들의 경우 주식거래세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⁴¹⁾

주식거래세는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의 의무가 발생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거래금 및 양도차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한 세 부담의 역진성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0.15% 안팎인 증권사 거래수수료의 두 배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수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금융투자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과세 방법의 적절성과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주식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여 과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1) 영국의 경우 주식거래세는 아니나 거래에 따른 인지세는 부과하고 1천 파운드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그리고 미국은 1965년, 일본 1999년, 독일 1991년, 스웨덴 1991년 과세 단순화 및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함.

참고 5 거래세와 자본이득과세 해외사례

〈표 Ⅲ-7〉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해외사례 정리

구분	거래세	자본이득과세
미국	연방과세 없음	종합과세 원칙, 일부 자본이득은 분리과세
일본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폐지 전 주식에 대한 세율은 0.3%, 채권의 경우 0.03%)	1989년 과세전환, 2003년 원천징수에서 신고분리과세 로 전환
독일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2009년 완전과세 전환(이전에는 1년 미만 보유 주식·채권만 과세) 분리과세와 종합신고 중 택일, 이자·배당소득을 25%의 동일한 세율로 과세, 채권양도차익 과세, 이월공제 허용
스웨덴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원래부터 과세되어 옴, 1991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영국	인지세 0.5% 부과 (단, 1,000파운드 이하 면세)	1962년부터 과세함, 신고분리과세, 자본이득세율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세율과 달리 과세, 채권양도차익과세, 자본손실이월공제, 기한 제한 없음

자료: 오윤·문성훈(2015),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